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7년 8월호

월간 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신수익 기준(K-IFRS 제 1115호) 적용시 고려사항
- 『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 지침』 제정
-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제정 공포

세무정보

- [2017 세법 개정안 - 기획재정부 (2017.08.02)]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신수익 기준(K-IFRS 제 1115 호) 적용시 고려사항

신수익기준 적용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예시*를 아래에서 설명하였으며, 기업들은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신수익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예시된 내용 이외에도 신수익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현재가치 고려
(1) 현재가치 고려

□ (주요 내용) 선불거래, 후불거래 등 재화나 용역의 이전시점과 대가 지급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유의적인 금융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격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정

※ 현행 기준은 판매대가의 유입이 이연되는 경우(후불거래)에 대하여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을 요구하나, 선불거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 다만,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 사용 가능

(참고)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계처리 사례 (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29)

(사례) 2년 뒤에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계약에서 고객은 (1) 2년 후 5,000 원을 지급하거나, (2) 계약시 4,000 원을 지급하는 방법 중 (2)를 선택,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은 6%라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시:	(차) 현금 4,000	(대) 계약부채 4,000
1년후:	(차) 이자비용 240(*)	(대) 계약부채 240
2년후:	(차) 이자비용 254(**)	(대) 계약부채 254
자산이전시:	(차) 계약부채 4,494	(대) 수익 4,494

(*) $4,000 \times 0.06 = 240$

(**) $4,240 \times 0.06 = 254$

반품회계처리
(2) 반품회계처리

□ (주요 내용)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그 원가를 환불부채 및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각각 총액 표시

※ 현행 기준에는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지침이 없음

- 현행 기준에서 순액으로 반품충당부채를 표시하였다면 新기준에서는 자산과 환불부채를 각각 총액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

(참고) 반품 회계처리 사례 (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22)

(사례) 기업은 고객들과 100건의 계약(100개 × 100원 = 총 대가 10,000원, 원가는 각 60원)을 체결, 고객이 30일 이내에 반품하면 전액을 환불,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97개의 제품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

현행실무(*)		新수익기준	
(차) 현금 10,000	(대)매 출 9,700(*1) 매출원가 180(*2) 반품충당부채 120(*3)	(차) 현금 10,000	(대)매출 9,700 환불부채 300(*4)
(차) 매출원가 6,000	(대)재고자산 6,000	(차)매출원가 5,820 (*5) 반품제품회수권 180 (*6)	(대) 재고자산 6,000

(*)현행 기준상 세부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대부분 반품충당부채를 순액으로 표시하나, 총액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1) 97개 × 100원 = 9,700원

(*2) 3개 × 60원 = 180원

(*3) 3개 × (100원 - 60원) = 120원

※ 손익영향: 9,700 - (6,000 - 180) = 3,880

(*4) 3개 × 100원 = 300원

(*5) 97개 × 60원 = 5,820원

(*6) 3개 × 60원 = 180원

※ 손익영향: 9,700 - 5,820 = 3,880

라이선스 수익

(3) 라이선스 수익

(주요 내용) 新수익기준은 라이선스 수익*의 인식시점에 대하여 현행 기준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시

*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특허권 등 기업의 지적재산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대가로 수령하는 수익

※ 현행 기준은 라이선스 수익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 고객에게 부여한 라이선스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이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라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

*예) 기업은 연재만화 속 캐릭터의 이미지(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발전)와 이름을 고객에게 4년 동안 사용하도록 라이선스(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58 참조)

**예) 기업은 유명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녹음판을 고객에게 라이선스하고, 고객은 2년 동안 녹음된 교향곡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59 참조)

총액인식 및 순액인식
(4) 총액인식 對 순액인식

(주요 내용) 기업이 본인임을 판단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현행 기준에서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였던 ‘신용위험 부담’ 지표를 삭제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

** 기업이 본인으로 거래한 경우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 대리인으로 거래한 경우 순액으로 인식

※ 본인 對 대리인 판단지표 비교(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

	현행수익기준	신수익기준
(1)약속이행이 주된 책임을 부담	○	○
(2) 재고위험을 부담	○	○
(3) 가격결정 권한을 보유	○	○
(4)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	○	삭제*

* 현행 기준에서 “신용위험 부담”을 주요 지표로 하여 ‘본인’으로 판단한 경우, 新기준 적용시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음

진행기준적용 판단 기준
(5) 진행기준 적용 판단기준

(주요 내용)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진행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됨

※ 현행 기준은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계약, 용역의 제공 등이 진행기준 적용대상

新수익기준의 진행기준 적용요건(K-IFRS 제1115호 문단 35)

(1)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예: 청소용역)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예: 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
(3)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예: 주문 제작 자산)

(6) 보증관련회계처리

□ (주요 내용)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되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하고 관련 수익은 보증기간에 걸쳐 인식

보증관련 회계처리

※ 현행 실무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보증비용을 총당부채로 인식

新수익기준의 보증 관련 규정(K-IFRS 제1115호 문단 B28~B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약속한 보증은 확신 유형과 용역 유형으로 구분 ① 확신 유형(assurance-type): 관련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으므로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에 영향 없음 ② 용역 유형(service-type):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거래가격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소통광장, 보도자료, 2017.08.08)

「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 지침」 제정
제정배경과 목적
(1) 제정배경과 목적

감사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당기 감사인, 회사(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임감사인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하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실무지침은 당기감사인이 당기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오류사항과 관련하여 당기감사인이 유의적으로 고려하고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중요하게 커뮤니케이션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전임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도 포함)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 하고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
(2) 적용대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에 적용

주요내용
(3) 주요내용
당기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가. 전기오류사항 발견 시 당기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당기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발견 한 경우 이 실무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실시
- 전임 감사인에게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발견사실을 통지하도록 경영진에 요청

- 만약, 경영진이 전임 감사인에 대한 통지요청을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당기 감사인이 직접 전임 감사인에게 통지
-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결론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임 감사인에게 충분히 제공
- 전임 감사인이 전기오류사항의 수정과 관련하여 당기 감사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전기조서의 열람 및 검토
- 당기 감사인 - 경영진 및 지배지구 - 전임감사인의 3자간 커뮤니케이션 실시

3자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해 당기감사인, 경영진 및 전임감사인이 검토한 내용과 결론
- 경영진이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기로 한 경우, 전기재무제표 수정방식(전기재무제표 재발행 또는 비교재무제표 수정)
-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기로 한 경우, 재감사 수행 주체(전임감사인 혹은 그 외 감사인) 및 그 계획
-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하기로 한 경우, 당기감사인이 수정사항에 대해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정의 적절성에 대해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지 여부 및 그 계획.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내용과 문안
- 경영진이 전기오류사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 당기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및 전임감사인이 취해야 할 조치

전임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나. 전기오류사항 발견 시 전임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전기오류수정사항 발견 시 이 실무지침에 따라 전임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감사기준서 560(후속사건)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
- 동 결정 결과에 따라 경영진에게 통지하거나 당기 감사인에게 직접 전달
-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기 감사인의 전기조서 열람 요청에 협조
- 3자간 커뮤니케이션 참여(응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등을 경영진에게 제공)

전기오류수정과 관련된 감사보고
다. 전기오류수정과 관련된 감사보고

이 실무지침은 전기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을 전기재무제표 재발행방식과 비교재무제표 수정방식으로 구분하고,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를 누가 재감사하는지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상황에 대해 당기감사인의 감사보고와 재감사시의 감사보고를 다룬다.

(상황1) 비교재무제표 수정
 (상황2) 전기재무제표 재발행-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상황3) 전기재무제표 재발행-전임감사인이 아닌 감사인(당기감사인 또는 제3의

감사인)의 재감사

특히 전기오류사항을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지 않고 비교 재무제표를 수정한 상황에서 당기 감사인이 해당 수정사항에 대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수정의 적절성에 대해 만족할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다음의 내용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전기오류수정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 ① 전기오류수정의 성격과 영향(관련 주석내용을 언급함)
- ②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하여 당기 감사인이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
- ③ 전임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임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전임감사인의 입장등)

적용시기
라. 적용시기

이 실무지침은 2017년 12월 15일 이후로 최초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뉴스, 2017.08.08)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제정 공포

**제정동기
작업경과**
및
(1) 제정 동기 및 작업경과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은 '13.4월에 전담팀 신설을 시작으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에 착수

회계기준원이 '03.3월에 발표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를 참조하여, 비영리조직회계기준전문위원회 구성.논의, 심포지엄 개최, 업종별 현장방문, 적용가능성 현장 테스트, 공개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자문, 회계기준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17.7.20.)을 거쳐 공표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은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지지만, 비영리회계실무에 점진적으로 수용,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

주요특징
(2) 주요 특징

이번에 발표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비영리조직에 적용 가능
- ② 감독이나 세무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수요를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체계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함

③ 비영리조직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통일

④ 비영리조직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운영성과표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활동, 지원활동(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수익사업활동에 관련된 비용도 고유목적사업과 구분하여 보고

* 모금비용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과 구분하여 표시 가능

👁 기능별 비용보고

(ㄱ) 사업수행비용: 비영리조직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ㄴ) 지원비용: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일반관리비용: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모금비용: 모금행사, 기부자명단관리, 모금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과 구분하여 표시 가능

(ㄷ) 수익사업비용: 비영리조직이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상비용

□ 기능별로 구분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성격별로 분석한 정보도 함께 주석으로 제공

- 인력비용 :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 시설비용 :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 기타비용: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

결과적으로 비영리조직은 다음의 정보를 운영성과표 및 그에 관한 주석을 통해 보고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고유목적사업비용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xxx	xxx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xxx

기대효과

(3) 기대 효과

일반정보이용자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부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줌

서로 다른 업종의 비영리조직 간에도 재무제표가 비교 가능해 짐

향후계획

(4) 향후 계획

'17년 하반기에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 실무적용에 도움 및 정착을 위해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기준 제정의 배경, 제정 시 고려한 사항, 해외사례, 적용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를 기준 공표와 함께 제공함

(출처: 한국회계준원, 소통광장, 보도자료, 2017.07.24)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2017 세법 개정안 - 기획재정부 (2017.08.02)

■ 2017년 8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 26 조) · 청년고용증대세제(조특법 제 29 조의 5) 통합 · 재설계 →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 간접지원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 · 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적용 허용

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 30 조의 4)

-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③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조특법 제 29 조의 3)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조특법 제 29 조의 2)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④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 63 조의 2)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 : (현행) 과세표준 × Min(이전급여비율, 이전인원비율) → (개정) 과세표준 × 이전인원비율

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제법인세 감면
- ** 감면한도 : 투자금액의 50% + 고용 1인당 1,000~2,000만원(투자금액의 최대 40%)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 한도액 확대(조특법 제 121 조의 2 제 14 항) : (현행)투자금액의 50% + 고용 1인당 1,000~2,000만원(투자금액의 최대 40%) → (개정)투자금액의 50% + 고용기준 50%

⑥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법인법 제 44 조②, 제 44 의 3 조③, 제 46 조②, 제 46 의 3 조③, 제 47 조③)

- 기업 M&A 등 조직변경시 세제혜택(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 추가**
- * 사업계속성, 지분연속성 등
-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2) 일자리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 29 조의 4)

-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 ⇒ 일몰 3년 연장
-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 20%로 상향 조정
-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 30 조의 2)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700만원(중소), 500만원(중견) 세액공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일몰 1년 연장

③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제 30 조)

* 중소기업 취업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

④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 30 조의 3)

* 근로시간 단축(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임금감소분 및 보전분에 대해 50% 소득공제
 ○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50%→75%)

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종료)(법법 제 56 조, 조특법 제 100 의 35 신설)

○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3년간 적용)
 - 기업소득 사용기준율(α, β)은 실태분석을 거쳐 시행령 개정시 확정 : 현행 대비 세부담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사용기준율·가중치 조정
 -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 취지에 맞추어 배당과 토지 투자를 기업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
 - 중·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임금증가 유도를 위해 가중치 및 적용대상 조정
 ○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대폭 상향(1.5~2 → 2~3)
 * (현행) 1.5(청년 2) → (개정) 고용증가 2(청년 정규직제정규직전환 3)
 ○ 임금증가분 계산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 전체근로자의 상위 10%, 300인 이상 기업의 상위 20% 수준
 - 대기업이 2차·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의 R&D 및 근로자 임금·복지 등에 지원하도록 상생지원액 가중치 상향(1→3)
 * 지원방식: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3)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①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 6 조)

-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 기본 50% + 최대 50%(고용증가율 x 1/2)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 등 : 10인, 기타 업종 : 5인) 규정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초기 3년간 확대 :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현행) 종전 사업 승계시 창업 불인정 → (개정)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 확대
 -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 (개정)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인수·합병 대가로 현금 50% 지급요건 삭제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②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편(조특법 제 7 조)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허용(조특법 제 127 조)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현행 30% → 최대 40%)(조특법 제 10 조. 다만,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한도(1억원)를 설정[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③ 재기 자영업자·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12.31.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1인당 3,000만원 한도)(조특법 제 99조의 6)
 - 영세 자영업자 :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 이하
 - 기존 체납세금 : 2017.6.30.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국세체납액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법인세, 2억원 한도)
 - 신성장 벤처기업 :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
 - 제 2 차 납세의무 :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 등이 법인 대신 납세의무 부담
 - 대상 : 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①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 제 55 조)**

- 과표 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 OECD 국가 중 단일세율 국가(동구권 5개국),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스위스 등 5개국)를 제외한 25개국 평균 41.9%(지방세 포함 47.1%)

②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소법 제 104 조) : (현행) 20% → (개정)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대주주(코스피) :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2018년 4월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 대주주(코스닥) :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2018년 4월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단계적 확대(소령 제 157 조) : (현행)

2018년 4월 종목별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초과 → (개정) 2018년 4월
 종목별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초과

③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제 45 조의 3)

* 특수관계법인과 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 변경

- 교차·3각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간에 몰아준 일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하여 계산

○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 : (현행)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비율이 30%
 초과시 적용 → (개정)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거래액 1,000억원
 초과시에도 과세대상에 추가

○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

* 2017.7.19.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상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기업 50%) 등 우대

④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제 69 조)

○ 세목간 형평,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
 → 3%로 단계적 축소 : 현행) 7% → (2018년) 5% → (2019년 이후) 3%

⑤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추후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장수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상증법 제 18 조) :
 (현행) 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 → (개정)
 가업영위기간 10/20/3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

-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2019년 시행)
 -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 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상증법 제 71 조) : (현행) 2년 거치, 5년 분납(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분납) → (개정) 10년(20년)으로 연장하고, 거치 여부는 선택 허용

(2)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조특법 제 100 조의 5)
 - 최대 지급액(만원) : 단독 77만원→85만원, 홑벌이 185만원→200만원, 맞벌이 230만원→250만원
- 외국인 한부모 가구, 장애인에 대한 지급 확대(조특법 제 100 조의 4)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 지급

②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 → 12%로 인상(조특법 제 95 조의 2)
 - *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0% 세액공제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조특법 제 97 조의 5)

③ 의료비 세액공제(15%) 확대(소법 제 59 조의 4)

-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
 - *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인상(15% → 20%)

④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 : 5년 이내 양도 → 10년 이내 양도(소령 제 155 조)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홀별이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조특법 제 100 조의 3)
 - * 소득기준 : 1,300만원 → 2,100만원, 최대지급액 : 85만원 → 200만원
-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노인장기요양급여)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소령 제 118 조의 5) : 현재는 월 한도액 이내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포함

⑤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소득령 제 155 조)
- 기부 장려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
-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소득법 제 47 조①단서 신설)
 - * 보편적 아동수당 :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
 - * 자녀장려금(CTC) :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 ** 출산·입양세액공제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원 &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원)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하여 중복 배제. 다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 지원
-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12.31.까지 연장(조특법 제 106 조)

주
요
내
용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조특법 제 91 조의 18)

- ISA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 유지(현재는 퇴직·폐업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ISA 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현행) 서민형 250 만원(일반형·농어민 200 만원) → (개정) 서민형·농어민 500 만원(일반형 300 만원)

⑦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제 126 조의 2)

-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2017년 ~ 20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 → 40%)
- 총급여 7 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조정(15 → 30%)하고, 추가 한도 100 만원 인정(2018.7.1. 지출분부터 적용)

(3) 자영업·농어촌 세제지원 확대**①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제 84 조)**

- *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8/108 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

②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 108 조)

- *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9/109 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적용기한 2018.12.31.)
-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 으로 상향 조정

③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조특법 제 122 조의 3)

- 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 초과→50% 초과) 등

④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율 인하(조특법 제 86 조의 3)

* 노란우산공제 : 공제부금 불입시 소득공제 → 만기수령시 퇴직소득

자율과세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20%)으로 과세

- 소기업 ·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 인하(20% → 15%)

⑤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제 7 조의 4)

*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협력기업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 2~3 차 이하 협력기업의 결제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일몰 3년 연장

⑥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 및 주세 경감을 확대(현재는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만 가능)(주세령 별표 3, 제 20 조)
-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주세 경감을 확대(주세령 별표 3, 제 20 조) : (현행) 20% → (개정) 출고량 5㎏ 이하 40%, 초과 20%
-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하여 다양한 주류개발 지원(주세령 제 2 조) : 현재는 산분, 향료 중 젖산, 호박산, 식초산, 퓨젤유, 에스테르류 등만 가능

⑦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조특법 제 71 조, 조특령 제 68 조),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 69 조의 3)
-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요건 중 면적 제한(1,650㎡) 폐지 ⇒ 일몰 3년 연장
-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조특법 제 116 조)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법 제 55 조①)

- 법인세 과표 2 천억원 초과 구간 : 22% → 25%

②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조특법 제 10 조)

- 대기업의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 당기분은 축소(R&D 지출액의 1~3% → 0~2%)

③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조특법 제 24 조, 제 25 조, 제 25 조의 3)

- 여타 투자세액 공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 일몰 2년 연장

④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법 제 13 조)

-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를 점진적으로 조정
- 공제한도 : 당해연도 소득의 80% → (2018년) 60% → (2019년) 50%

⑤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소득법 제 19 조①, 제 25 조③, 소득령 제 55 조①)

-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⑥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일몰종료(조특법 제 104 조의 27)
 - *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지원(9% 원천징수, 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
-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소득법 제 129 조①)
 - *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
-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일몰종료(조특법 제 91 조의 17)
 - * 해외주식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한 주식 매매·평가이익 및 환차익 비과세

-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종료(조특법 제 91 조의 15)
 - *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해 14% 분리과세

- ⑦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일원화(조특법 제 133 조)
 - 여타 감면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수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하향조정 → 일몰 3년 연장 : (현행) 25%(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는 40%) → (개정) 20%(30%)

- ⑧ 정책목적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
 -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0~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제 104 조의 5) : (현행) 세무대리인 400만원(법인 1,000만원) → (개정)200만원(500만원)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제 97 조의 6)
 - *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 ⑨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 축소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을 과세 전환(조특령 제 106 조, 조특칙 별표 10) : 보관업, 보호예수, 설계·감리용역, 조경사업 등
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부가령 제46조)

- (2) 세원투명성 강화
 -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제 133 조①)
 -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위반시 가산세 5%)
 -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외감법인 제외)을 추가(법인법 제 60 의 2 신설)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주업인 법인(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한도를 상향 조정(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i)무신고 (ii)무기장 가산세 부과시에도 (iii)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5%) 적용 : (현행) $\text{Max}\{(i), (ii), (iii)\}$ → (개정) $\text{Max}\{(i), (ii)\} + (iii)$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 의 3)

-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미발급시 50% 과태료)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3개 업종 추가(현행 58개 → 61개 업종) : 약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추가

③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제 96 조)

- * 의무임대기간(4년 이상, 준공공임대는 8년),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3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4년 이상 임대시 소득·법인세 30% 감면(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임대시 75%)

④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제 68 조①) : (현행)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 (개정)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제 211 조의 2②)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2019년 시행)

⑤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부가법 제 60 조)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2% → 3%)
- 공급가액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 금액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1% → 2%)

⑥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제 106 의 10)

-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2019년 시행)
 -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110를 대리납부 :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이 약 27~56%임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원천징수
 -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리납부된 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시행령에서 규정(예: 1% 내외)

⑦ 역외세원 관리 강화

-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인하(국조령 제 49 조) : 10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축소(법인법 제 57 조의 2) : 14%→10%(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를 10%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인상(국조령 제51조①) : 보고서별 1천만원 → 3천만원

⑧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에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내에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 인정(국조법 제 16 조의 3 신설)
 - * 혼성금융상품 :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예: 이익참가부 사채)으로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이자비용 공제)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배당 비과세)으로 취급

→ 양 국가에서 이중 부과세

** 이자비용으로 공제받으려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과세된 사실을 입증

- 다국적 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과다 차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2019년 시행)(국조법 제 16조의 2 신설) :
 내국법인(금융·보험업은 제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차감전 세무상 이익)의 30% 초과시 초과이자비용에
 대해 비용 불인정

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지분 25% 이상 → 5% 이상) (소득령 제 179조⑩, 법인령
 제 132조⑧) :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이상인
 경우(인도 등 10개국) 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 가능
-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 확대 및 원천징수 세율 인상

⑩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관세령 제 263의 2①, 별표 3) : 분기별
 합계 5천불이상 → 실시간 건당 600불 이상
- 중고차 밀수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관세법 제 277조) : 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에 적재한
 수출 중고차에 한정하여 운영 중
- 체납 징수 제고를 위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제 116조의 2①) : 체납액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관세체납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인 화주 이외 관세 포탈 등 범칙행위자(수입명의인
 등)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 부과(관세법 제 19조①,⑤) : 교사·방조범 등을
 포함하며, 범칙행위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조세제도 합리화

①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상증법 제 16 조②, 제 48 조, 상증령 제 38 조)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정관에 규정)으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주식보유 한도를 상향조정(10%→20%)
-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일치(2019년 시행)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손금산입), 기부받는 공익법인(증여세 비과세)
- 기부금단체간 형평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법인법 제 24 조②, 법인령 제 36 조①)
 - 공공기관 등은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감안
 - 현재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도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 고시하되, 기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약 7천개)

②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제 4 조③)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 (현행) 2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 (개정) 1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③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소득법 제 118 조의 2 등, 소득령 제 167 조의 9 등)

- 자본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 해결

④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조정(소득법 제 19 조①, 제 21 조①, 제 45 조②, 소득령 제 32 조, 제 55 조①, 제 87 조)

-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60%)으로 단계적 조정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 :

(현행)80% → (2018년)70% → (2019년부터)60%

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소득법 제 95 조)

-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기간조정(2019년 시행)

⑥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조특법 제 72 조)

- * 농·수협 등 8개 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세무조정 후 저세율로 법인세 과세
- 대규모 조합법인(매출액 100억원 초과)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⑦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법 제 1 조②, 개소령 제 2 조의 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전용 연료간 형평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 조정
 - 발전용 유연탄 : 30 원/kg(개별소비세 30 원)
 - 발전용 LNG : 90.8 원/kg(개별소비세 60 원, 수입부과금 24.2 원, 관세 6.6 원)
-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발열량 차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kg 당 6 원 인상

(4)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①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 기한 연장 : 10 일 → 15 일
-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고지하도록 의무화 :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일시중지 등
-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 요구의 금지 명문화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시보관

요건* 및 반환의무** 강화

* 무신고,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한해 허용

** (현행)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 (개정) 현행요건 + 반드시 14일 이내에 반환하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내용, 과세이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하도록 의무화
- 관세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고 변호사·관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칙사건의 범위 확대 : (현행)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범칙사건 → (개정) 모든 범칙사건

②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국기법 제 81 조의 18, 국기령

제 63 조의 16)

*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확대,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 심의를 위해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

-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기회 부여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은 기재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확대 : (현행) 민간위원 1/2 이상 → (개정) 납세자보호담당관외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의 법적구속력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심의결과 이행 의무화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부여

③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국기령 제 53 조)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 (현행) 민간위원 1/2 이상 → (개정) 민간위원 2/3 이상

④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국조법 제 6 조의 3, 국조령 제 14 조의 7, 관세법 제 37 조의 2, 관세령 제 31 조의 4)

-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 확대 : (현행)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 → (개정)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도 추가
- 관세청과 국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④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환특법 제 10 의 2

신설)

수출업체가 관세를 과다환급 받아 사후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가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는 실체적 심리를 거쳐서 비로소 판명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는 이상 그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는 그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소득자에 불과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 2015 두 55134, 2017. 7. 11.).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신고조정에 의한 영업권 손금산입 가능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동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제 5 호의 2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사전-2017-법령해석법인-130, 2017. 5. 19.).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